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

제출년월일 : 1992년 3월 12일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정부가족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를 인상하여 가족 계획사업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키 위함.

2. 주요골자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 제4조제1항에 자궁내장치 수수료중 일부를 불임시술 사후관리비로 사용토록 단서 조항을 삽입하고 별표 수수료액표중 피임약제 인상 및 자궁 내장치 수수료를 유료화함.

3. 개정근거

- 보건소법 제8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

4. 참고사항

- 보건소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128조
- 모자 보건법 제12조 (피임시술 및 약제기구의 보급) 및 동법제23조 (비용의 징수)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 (비용의 징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자궁내 피임장치 시술요원이 시술하는 경우 시술비를 구세입 조치하여 가족계획 사업에 재활용 하고 자궁내 장치 수수료중 1건당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사후관리비 (대한불임시술협회)로 사용한다.

〈별 표〉 중 2 피임약제 및 기구 보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임약제 및기구보급	가. 피임약제(제21정입 또는 28정입)	1싸이클	230원	· 가족계획요원 또는 대한가족계획 협회직원 이외의 자를 통하여 보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먹는 피임약 33원, 콘돔 300원으로하고 이중 100원은 실제 보급하는 자의 수입으로 한다. · 자궁내장치 수수료 중 1건당 - 불임시술 사후관리비 (대한불임시술협회) : 1,000원 - 가족계획 재활용비 : 1,000원으로 한다.
	나. 콘돔(6개입)	1갑	200원	
	다. 자궁내장치	1건	2,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